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안내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 등의 고충해소 및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 ① **[대 상]** 외국인 불법고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22. 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로서,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①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간 초청(고용) 제한,
- ② 5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간 초청(고용) 제한

※ '22. 12. 5.부터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인 초청(고용)이 일정기간 제한됨

- ② **[적용 제외]**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경우
- ③ **[고용제한 특별 해제 내용]** 위 ① 대상자(고용주)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통해 외국인 초청(고용) 가능
- ④ **[향후 정책방향]** 인력부족 산업 적극 지원 및 국민 일자리 보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

☞ 동 조치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② 법무부장관은 「과거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